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3. 17.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용관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바, 해당 사업을 다년간 환경 분야 업무 대행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증대

##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신청 모집 공고 및 사업장 선정
  - 선정사업장의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감독
  -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정산 및 결과 보고
- 위탁시설 개요
  - 2022.12.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민간·공공시설
    - ※ 17년 이상 운영 GHP는 노후화 등에 따라 지원 대상(2009년 이후)에서 제외
- 위탁기간 : 9개월 (2025. 4. ~ 2025. 12.)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심의위원회 개최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사업비 : 198,022천원(국비 56%, 도비 22%, 시비 22%)
  - 사업량 : 저감장치 약 63대(약 3,143대/천원)
  - 위탁수수료 : 7,920천원(총 사업비의 4%)

○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선정,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감독 등 사업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의 전문인력,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 추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업 공고, 대상자 선정, 선정사업장 관리·감독, 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을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에서 주관 하여 안정성있는 사업 운영
경제적 효율성	○전문기관 위탁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한 업무처리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년간 환경 분야 업무 대행으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성과 측정의 용이성	○해당 없음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해당 없음
총 합 의 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원활히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함.

○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2025. 4.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기후에너지과

##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검토결과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며 환경부의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지자체의 권한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임
- 향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과 면밀한 협약서 작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제2장 보조사업 추진****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재배정) 등
- (유역·지방환경청)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정산자료

제출,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

※ 지자체 장은 전문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냉동공조협회\* 등)에 협약/계약을 통한 업무대행 또는 기술자문 가능(업무대행의 경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지원 시범사업(1·2차) 용역 수행(환경부↔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 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등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 장은 '24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현황 및 사업 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지방비 보조) 지자체 장은 국고보조금 집행시 지방비 보조금 비율(40%)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 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및 동 지침, 보조금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4년 보조금 지침 상'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에 한함('23년 이월예산 우선 집행)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 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 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가스열펌프(GHP) 제원 및 저감장치 인증 현황, 부착불가 가스열펌프 등을 확인하여 지원

####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 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기관 >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원주청 관할 제외)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전남, 제주,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지방환경청은 지자체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지방비 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 교부**(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 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 장과 지방환경청장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예산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환경청장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지방환경청장은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자체 장은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
  -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지자체 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자격기준 위조, 허위 청구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 가능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과금,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 등